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부산광역시 ○○○ 홈페이지 ○○○○ 처리위탁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사상구

내 용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구민의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지원센터” ○○○○(www.*****.or.kr)를 “(주)○○○○○”에 위탁운영하고 구민의 육아지원 및 평생교육 목적으로 “○○○지원센터” 홈페이지(www.*****.kr)를 “○○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 따르면 비밀번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시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기관의 “○○○지원센터” ○○○○(www.*****.or.kr)와 “○○○○지원센터” 홈페이지(www.*****.kr)는 ○○○ ○○○을 하는 ○○○○에 대해서 ○○구간 ○○○ 대책을 적용하지 않아 ○○○ ○○○○ 정보가 ○○으로 ○○됨으로써 ○○될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탁기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상구청장은

[시정]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에 대하여 ○○○○가 ○○○ 되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 ○○○○○○ ○○○○○) 등 ○○○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